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3. 2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72호로 2022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사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직원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 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마.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위원회 운영 사항·예산수반 사항: 별도의 개선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2. 2. 10. ~ 3. 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현청사가 '76년 건축 후 45년 경과한 노후건축물이며, 본관·별관·보건소 등 공간 분산에 따른 구민 이용불편및 사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따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 출연금·보조금·교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함.
- 안 제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존속하며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함.
-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를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청사설계 용역비 및 건축비,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함.
-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함.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운용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함.

-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함.

○ 참고로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은

- 대상지는 당산동3가 2-1, 3, 4(14,202.3 m²)으로 당산공영 주차장(시유지)과 영등포구청사(구유지) 교환을 통해 서남권 거점시설(서울시) 및 영등포구 통합청사(영등포구)를 건립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상 2028년까지 실행하며 총 사업비 236.30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2028	
(자체) 타당성조사 및 기본 정밀안전진단 용역	르계획, 토지교환 협약	수탁 기관선정 구의회 심의의결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mark>토지</mark>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교환 (현상공모)	시업시행	
市도건위 타당성조사 市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지방행정연) (자문)						
① 사전검토단계		② 행정절차 이행			③ 사업추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안임.

다만, 거액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도시 경쟁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및 구민생활편의를 충족시키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우리구 구민에게 충분한 홍보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 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3. 21.

行政委員會 專門委員金玉然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473호로 2022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22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 1. 13. 시행)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1) 총 2개 조례 / 2개 조문 (일자리경제과 등 2개 부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단순 표현·자구의 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후 2022.1.13. 시행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2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조례별 개정 내용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	제1조(목적)
치법」제130조 및 <u>같은 법 시행</u>	같은 법 시행
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에 따	령 제78조부터 제80조
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	
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제1조(목적)
치법」제12조 및 <u>같은 법 시행</u>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u>령 제10조</u>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	
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일괄로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 할 필요가 있을 것
-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